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채용후보자,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비위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격상실, 면직 기준을 강화하고,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정규임용, 채용후보자,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자격상실, 면직 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,

소방공무원 필수보직기간 계산 시 휴직기간, 직위해제처분기간,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고, 경력 경쟁채용자의 경우 그 필수보직기간을 연장하며,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절차를 준용한다.

제21조제3호 중 “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”을 “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퇴학처분”을 “퇴교처분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6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

7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

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면직시키거”를 “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

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,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
2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
3.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4.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질병·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
6.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③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④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제2항 중 “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”를 “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”로 한다.

제27조 중 “교관”을 각각 “교수요원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(휴직기간, 직위해제처분기간,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.)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제3호 중 “전보권자”를 “임용권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교관”을 각각 “교수요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법 제7조제2항제1호·제4호 및 제5호”를 “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”로, “이내(휴직·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)에”를 “이내에”로,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·제6호”를 “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(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)·제6호”로 한다.

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 제29조”를 각각 “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 제36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임용,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관한 적용례)

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전보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이후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)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제21조(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) - ----- ----- ----- 다만,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절차를 준용한다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<u>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</u>	3. ----- <u>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</u> ----- -----
4.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질병·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외의 사유로 <u>퇴학처분</u> 을 받은 경우 <u><신설></u>	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퇴교처분</u> ----- -- 5.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

<신 설>	<u>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
<신 설>	6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
<신 설>	7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
제22조(시보임용 소방공무원) ① (생 략)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<u>면직시키거나</u>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.	제22조(시보임용 소방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<u>면직시키거나</u> -----.
1.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1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
2.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	2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
<신 설>	3.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

<신 설>	<u>련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</u>
3. (생 략) <신 설>	4.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질병·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
<신 설>	5. (현행 제3호와 같음) 6.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<신 설>	③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.
<신 설>	④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제24조(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) ① (생 략)	제24조(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) ① (현행과 같음)
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	②-----

는 시보임용예정자의 제1항의
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
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
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
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제27조(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
직)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
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
의 최초보직은 소방공무원교육
훈련기관의 교관으로 하여야 한
다. 다만, 교관으로 보직할 수
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교
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
보직하여야 한다.

제28조(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
제한) ① 소방공무원의 필수보
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
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
않다.

1. 2. (생 략)

3.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
의 전보의 경우

----- 교육훈련과정의 졸
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
직) -----

----- 교수요원-----
---. --- 교수요원-----

-----.

제28조(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
제한) ① 소방공무원의 필수보
직기간은 1년(휴직기간, 직위해
제처분기간, 강등 및 정직 처분
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
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.
이하 이 조에서 같다.)으로 한
다. 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임용권자-----

4. ~ 11. (생 략)

②중양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
교 교관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
으로 한다. 다만, 기구의 개편,
직제·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
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
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
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.

③법 제7조제2항제1호·제4호
및 제5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
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
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
된 날부터 2년 이내(휴직·직위
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
아니한다. 이하 이 항 및 제4항
에서 같다)에, 법 제7조제2항제
2호·제3호·제6호 및 제7호에
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
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
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
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
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
수 없다. 다만, 제1항제1호·제2
호·제4호·제6호 및 제7호의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-- 교수요원-----
-----.

교수요원-----
-----.

③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

----- 이내에-----

----- 5
년 -----

----- 제1항제1호·제2호
·제4호(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
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
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)

④ ~ ⑥ (생략)	· 제6호 ---.
제31조(별도 정원의 범위) ①·② (생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③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·제3호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	제31조(별도 정원의 범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1. 시·도지사가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 제29조에 따라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·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	③ -----
2. 소방청장이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 제29조에 따라 수립하는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	-----
	1. -----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 제36조-----
	2. -----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 제36조-----

3. 시·도지사가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 제29조에 따라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·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	3. -----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 제36조-----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운영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044